-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❍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 통보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, 예산군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 관련 조례를 예산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(안 제5조)

-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등을 주민자치회 기능에 포함

❍ 주민자치회의 구성규모 및 위원자격 확대(안 제6조, 제7조)

- 구성규모 : 30~50명 ⇒ 20~50명
- 위원자격 : 지역주민,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 ⇒ 지역주민,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,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소속 임·직원

❍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변경(안 제9조)

-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 추천, 주민 공모 등 공개모집한 후보자 중

(기존)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

(변경)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

※ 위원선정위원회는 폐지

❍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, 책임성 강화(안 제9조, 제12조, 제17조)

- 위원 추첨 전까지 주민자치교육과정(4시간 이상) 이수 의무화, 외부감사 선임 가능, 사익추구 금지 의무조항 신설

❍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3조)

- 분과위원회 구성시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,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,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의 임·직원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함

❍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(안 제22조)

- 기존 위원수당,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주의 지원에서 확대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【붙임1】

- 「**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**」제27조,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　　타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 : 2019. 6. 20. ~ 7. 10.(20일간)

- 기간 중 의견 :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【붙임2】

4) 성별영향평가서 :【붙임3】

4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 만든 표준 조례안에 의거

❍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